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223
----------	-------

발의연월일 : 2026. 3. 4.

발 의 자 : 김현정 · 최민희 · 진성준
김남근 · 박선원 · 채현일
임미애 · 김승원 · 손명수
강준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보다 더 많은 수량을 이용자에게 오지급하여 다량의 가상자산이 매도되고 가격변동이 크게 이루어진 사건이 발생하였음.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하여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구체적인 분리보관 방식이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하여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별도의 가상자산주소로 보관한 것이 아닌 단순 내부 장부상으로만 분리하여 관리한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별도의 가상자산주소로 분리하여 보관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7조).

법률 제 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고유식별번호를 말한다”를 “고유식별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분리하여 보관”을 “별도의 가상자산주소로 분리하여 보관”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가상자산의 보관) ① 가상 자산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위 탁을 받아 가상자산을 보관하 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용자명부를 작성·비 치하여야 한다.	제7조(가상자산의 보관) ① -----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이용자의 가상자산주소(가상 자산의 전송 기록 및 보관 내 역의 관리를 위하여 전자적으 로 생성시킨 <u>고유식별번호</u> 를 <u>말한다</u>)	3. ----- ----- ----- <u>고유식별번호</u> <u>말한다. 이하 같다</u> -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 을 <u>분리하여 보관</u> 하여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 산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가 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여 야 한다.	② ----- ----- -- <u>별도의 가상자산주소로 분리</u> <u>하여 보관</u> ----- ----- ----- -.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